

	<h2 style="margin: 0;">표창 규정</h2>	규정번호	3-3-19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2.09.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내 표창의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대학 소속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발전에 공적이 큰 외부인사에게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기준) ① 공로상: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 대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효과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높이는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5.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시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각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근속상: 성실 근면하게 대학에 장기 근속하는 동안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대학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③ 대외상: 교육부 등 외부 기관에서 표창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추천 의뢰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④ 강의평가우수교원상

제4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행정부서의 장과 학과장 및 부속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대외 표창 추천은 총장이 행한다.

②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방법) ① 표창은 매년 개교기념일 또는 필요시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공로표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로패를 수여하며 근속표창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근속표창패를 수여한다. 다만, 표창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해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근속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표창대상자 선발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한다.

1. 표창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뚜렷하고 객관성,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대상자가 아래 제3항의 결격이 있는지의 여부
4. 기타사항(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하여 대상자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하위직 우선
2. 근무성적 평점점수가 많은 자 우선
3.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강의평가우수교원 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